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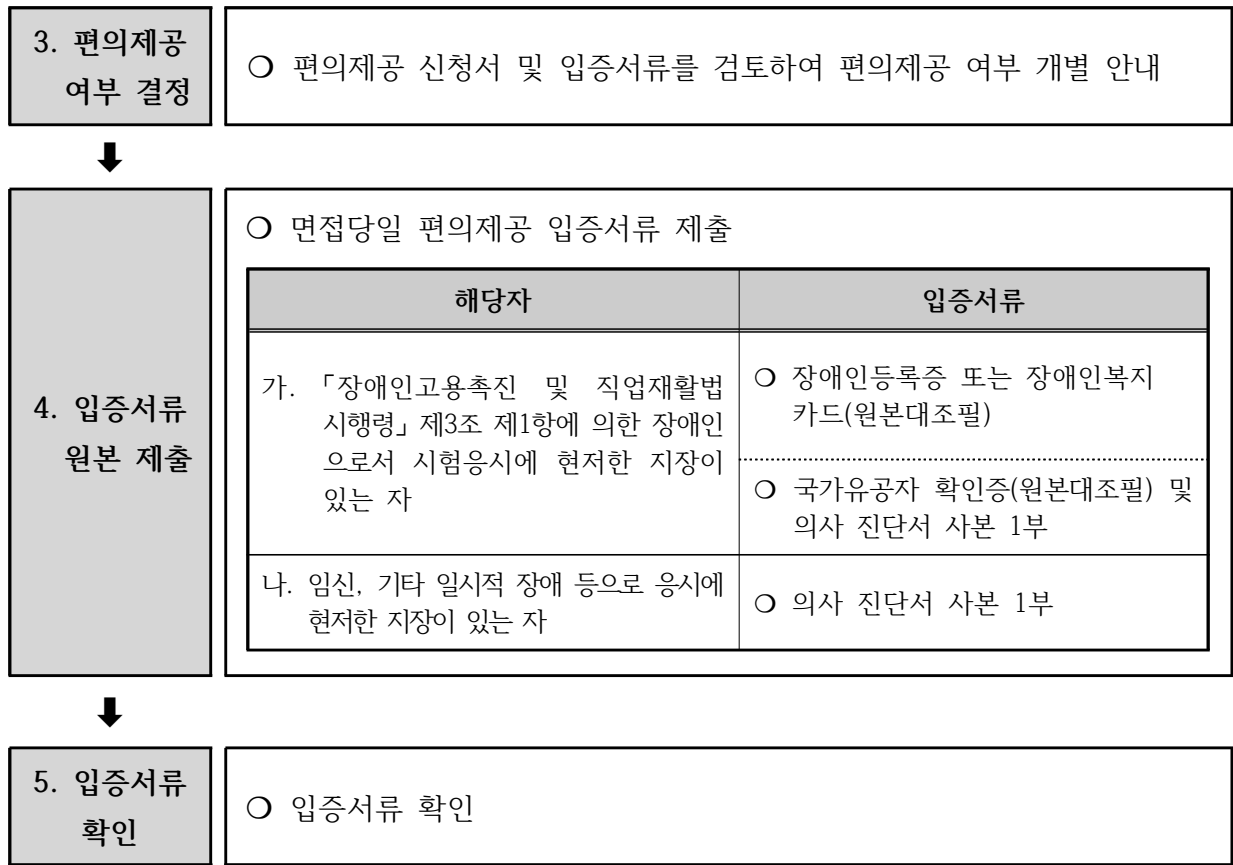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

1 편의제공 대상자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나. 임신,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2 편의제공 신청절차

1. 편의제공 내용 확인	○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를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참고1]의 장애유형(정도), 편의제공 내용 확인)						
2. 신청서 및 입증서류 사본 제출	○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제공 신청서 및 입증서류 사본 제출 <table><tr><th>해당자</th><th>입증서류</th></tr><tr><td>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td><td>○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증 사본 및 의사 진단 사본 1부</td></tr><tr><td>나. 임신,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td><td>○ 의사 진단서 사본 1부</td></tr></table> ※ [참고2]를 확인하여 의사 진단서에 장애 등으로 인한 시험 응시에 불편 사항 및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도록 할 것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각 1부 별첨	해당자	입증서류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증 사본 및 의사 진단 사본 1부	나. 임신,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사본 1부
해당자	입증서류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증 사본 및 의사 진단 사본 1부						
나. 임신,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사본 1부						



3 편의제공 내용

구 분	내 용
별도 문제지	문제지 글자를 확대(118%, 200%, 350%) 및 축소(82%) 제작
별도 답안지	답안지 글자 확대(118%, 200%, 350%) 및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
별도 시험실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별도 시험실 배정 또는 좌석간격 조정
시험시간 연장	필기시험 시간을 1.5배 또는 면접시험 시간 연장(20분 이내)
대독, 대필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를 읽어주거나 답안카드를 기재
장애인보조기구	시험운영과 시험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기구의 사용 허가
수화통역사	시험 진행 방송 및 감독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화 통역
도우미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편의제공 도우미를 배치

가.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입증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입증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참고1]의 편의내용과 입증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나.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참고 2]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다. 시험 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2.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3. 채용 편의제공 신청서 서식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편의내용		최종면접 편의내용	
지체 장애	상지	심한 (기존 1~3급)	· 시험시간 연장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별도 시험실 · 대필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도우미 지원
		심하지 않은 (4~6급)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별도 시험실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하지		· 별도 시험실 · 도우미 지원			
뇌병변 장애			· 시험시간 연장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별도 시험실 · 대필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면접시간 연장 · 도우미 지원
시각 장애	심한 (기존 1-3급)		· 시험시간 연장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별도 시험실 · 대독 · 대필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도우미 지원
	심하지 않은 (기존 4-6급)		· 시험시간 연장 ¹⁾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별도 시험실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청각 장애	심한 (기존 1-3급)		· 시험시간 연장 · 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면접시간 연장 ·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 필답면접
	심하지 않은 (기존 4-6급)		· 별도 시험실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언어, 신장, 심장장애			· 별도 시험실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뇌전증 장애			· 별도 시험실 · 발작이 있을 경우 발작시간 만큼 시험시간 연장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발작이 있을 경우 발작시간 만큼 시험시간 연장
지적장애			· 시험시간 연장 · 별도 시험실 · 도우미 지원			
장루 · 요루 장애			· 별도 시험실 · 화장실 이용 가능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임부·산부			· 별도 시험실			
기타			· 심사 후 결정			· 심사 후 결정

1)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시간 연장(1.5배) 허용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수화통역사, 도우미, 대독 및 대필자는 국시원에서 지정된자로 배치합니다.

※ 답안카드 대필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시험문제 대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참고2]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
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일본)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임신부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지체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상기인은 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한정도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 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참고3] 채용 편의제공 신청서 서식

시험 분야			시험구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성 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응시자 : 보호자 :
주 소		□□□□□		
구 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상세기술>		
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의사 진단서 ※ 위 서류(사본) 중 한 가지 제출 ※ 원서접수 기간 내 해당서류 사본 제출 ※ 면접시험 당일 입증서류 지참		
편의 제공	시험시간 연장	☐ 해당 없음 ☐ 필기시험(1.5배) ☐ 면접시험		
	문 제 지 (택1)	☐ 해당 없음 ☐ 대독 ☐ 별도문제지 (☐ 118% ☐ 150% ☐ 82%)		
	답 안 지 (택1)	☐ 해당 없음 ☐ 대필 ☐ 별도답안지 (☐ 118% ☐ 150%)		
	시 험 실	☐ 해당 없음 ☐ 별도 시험실		
요청 사항	장애인 보조기구	☐ 해당 없음 ☐ 보조기구 명칭() ☐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필요사항 :)		
	기 타	☐ 해당 없음 ☐ 도우미 ☐ 필담면접 ☐ 수화통역사 ☐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 ☐ ()		
※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